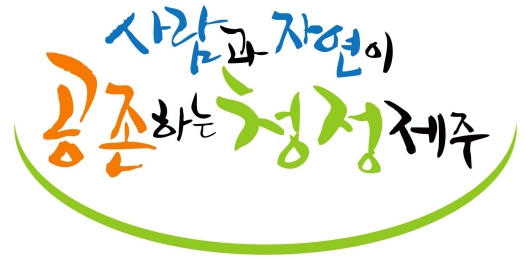




제844호. 2020. 3. 18(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도 보

## 목 차

### 규 칙

제660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훈 령

제34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제350호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 14

### 입 법 예 고

제2020-18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제2020-1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제2020-20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제2020-21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4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제2020-37호 등록대상동물의 도내 반·출입 등에 관한 관리요령 고시 ..... 35

제2020-38호 공공하수도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 ..... 35

## 공 고

제2020-707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	36
제2020-872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공고 .....	38
제2020-875호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	38
제2020-88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 신청에 따른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공고(수정) .....	41
제2020-890호 제주 보름앗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 열람공고 .....	44
제2020-912호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열람공고 .....	45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한국요양보호사협회 제주지부) .....	46

##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2020-86호 고산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47
제주시고시 제2020-87호 신흥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48
제주시고시 제2020-88호 광평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49
제주시고시 제2020-89호 고산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50
제주시고시 제2020-90호 고성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51
제주시고시 제2020-91호 한원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52
제주시고시 제2020-92호 한림3리 마을만들기(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53
제주시고시 제2020-96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해안동 175-1번지 일원) .....	54
제주시고시 제2020-100호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 고시 .....	55
제주시고시 제2020-103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변경)(노형동 925번지 일원) .....	57
제주시공고 제2020-949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59
제주시공고 제2020-96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59
제주시공고 제2020-99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0
제주시공고 제2020-99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61
제주시공고 제2020-100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1

## 서 귀 포 시

서귀포시공고 제2020-83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63
서귀포시공고 제2020-833호 대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	65
서귀포시공고 제2020-834호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65

2020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0년 2월 27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  
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회 롱

2020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60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 결과는”을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으로, “재검토로”를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회 롱

2020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훈령 제34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신속한 결원보충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  
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2. 비정규직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경우

3.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해당 시험 분야의 예비 또는 추가 합격자로 충원하는 경우 제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근로계약) 인사부서의 장은 채용된 공무원과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관리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채용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채용한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위하여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도록 한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만 해당한다) 각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3항 본문 중 “사회경험과 학식 있는 법조계·학계·노동계 인사”를 “법조계·학계·노동계 인사, 퇴직공무원 및 사회경험과 학식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무부서”를 “복무부서 및 감찰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회와”를 “감사위원회, 감찰부서의 장 및”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과 숙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휴일 및”을 “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휴일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원의 유급휴가일수는 15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연차유급휴가의 특례)”를 “(연차 당겨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33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2분의 1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당겨 쓰기한 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로 하며, 연차를 당겨 쓰기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구호휴가는 제외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소속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병가를 허가한 경우,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복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직이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월 2일 이내로 병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월 2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를 우선 사용하게 한 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병가 월 2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병가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가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연 6일까지로 한정한다):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일수가 월 2일을 초과하는 경우: 무급
- ⑥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없이 연속하여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9조와 제15조”를 “제10조 및 제16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검진 등을 받을 때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 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진단·검진 등을 받을 때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휴직

제4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와 감찰부서”로, “감사를”을 “감사 및 감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 및”을 “감사위원회와 감찰부서는 감사결과 및 감찰결과 개별 지적사항이나”로 한다.

제5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제89조 앞에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으로 한다.

제89조를 제93조로 하고, 제89조부터 제9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제9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또는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사부서의 장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 또는 감찰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3조(중전의 제8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장 보칙

별표 4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신원진술서”란과 “기본증명서”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징계양정 기준(제6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b>1. 성실의무 위반</b> 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배임, 절도 나. 직무대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라. 부정청탁 마. 기 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해고-감봉 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b>2. 복종의무 위반</b>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 타	해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b>3. 직장이탈금지 위반</b> 가. 무단결근 7일 이상 나. 무단결근 3일 이상 7일 미만 다. 기 타	해고 정직 정직-감봉	- 해고-정직 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b>4. 친절공정의무 위반</b>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5. 비밀업무의무 위반</b>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b>6. 청령의무 위반</b>	[별표 4의2]와 같음				
<b>7. 품위유지의무위반</b> 가. 성폭력·성매매(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 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b>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b>	해고	정직	감봉	견책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li> <li>공금 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li> <li>제1호 다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li> <li>제1호 라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 청탁을 말한다.</li> </ol>					

[별표 4의3]

음주운전 징계 기준(제68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청소차·공영버스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 로 인적 또 는 물적 피 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운 전 업 무 관 련 공 무 직 이 음 주 운 전 을 한 경 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별지 제1호의2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000과(원·본부·사업소)에 채용된 공무원직 근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해당 사유가 확인 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호의3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인사관리

▶ 수집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명</li> <li>▪ 자택전화</li> <li>▪ e-mail</li> <li>▪ 주 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li> <li>▪ 휴대전화</li> </ul>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 및 경력, 자격 및 면허, 가족 관계사항, 병역사항	공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공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운전직의 경우)	공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b>성별</b>	<b>한글</b>	직 원 관 리 카 드								<b>직종</b>				
	<b>한자</b>									<b>소속</b>				
<b>최초근로일</b>		<b>성별</b>		<b>생년월일</b>		<b>주 소</b>								
<b>(사 진)</b>	<b>가 족 사 항</b>	<b>관계</b>	<b>성명</b>	<b>생년월일</b>	<b>학력</b>	<b>직업</b>	<b>관계</b>	<b>성명</b>	<b>생년월일</b>	<b>학력</b>	<b>직업</b>			
학 력						퇴직급여		<b>퇴직금 중간정산</b>	<b>지급일자</b>	<b>지급금액</b>	<b>관련문서</b>			
<b>기 간 (부터 ~ 까지)</b>	<b>학 교 명</b>		<b>전공(학위)</b>		<b>퇴직연금 가입여부</b>			<b>가입여부</b>		<b>퇴직연금 기산일자</b>				
					외국시찰/ 교육훈련			<b>기 간</b>	<b>국가명</b>	<b>목 적</b>	<b>시행기관</b>			
자격 / 면허		<b>취득일자</b>	<b>자격(면허)명</b>	<b>수여기관</b>		병역사항		<b>병과</b>	신 체 사 항					
								<b>군번</b>	<b>신 장</b>	cm				
								<b>입대연월일</b>	<b>체 중</b>	kg				
포상 / 상훈		<b>포상연월일</b>	<b>포상명</b>	<b>시행청</b>				<b>제대연월일</b>	<b>시 력</b>	<b>좌</b>		<b>우</b>		
								<b>계급</b>	<b>혈액형</b>					
						<b>특기 취미</b>	<b>건강상태</b>							
							<b>비 고</b>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 이행, 연차 당겨쓰기, 휴직자 발생 시 결원보충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정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채용 공고 생략 및 기간 단축의 구체적 사유 명시(제5조)

나.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의무 조항의 폐지 및 서약서의 제출(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다. 인사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라. 유급휴일에 4·3희생자 추념일 신설(제31조)

마. 연차 당겨쓰기 조항의 신설(제33조의2)

바. 공가의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을 추가(제42조)

사. 간병 휴직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제43조 제4호)

아.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 제한 폐지(제43조의2)

자.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신설(제58조)

차.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제68조, 별표4, 별표4의 3)

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20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훈령 제350호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리를”을 “관리·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조직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인원을 승인하는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 총무과를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찰부서”란 제주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및 행정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제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긴급한 결원보충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60일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전염병 예방, 구제역 방역 등 긴급한 방제·재난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7조제2항제1호 중 “180일 미만”을 “근로계약기간이 60일 미만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부서의 장이 승인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제8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채용공고 된 근로조건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괄부서”를 각각 “감찰부서 및 총괄부서”로 한다.

제23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부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임금대장
3.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
5. 별지 제11호서식의 출근부

제25조의 제목 “(연장 근로)”를 “(연장 근로 및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출장 및 교육을 받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 중 “소환된”을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검진 등을 받을 때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 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진단·검진 등을 받을 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의 보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병가허가 최대 일수
1월	5
1월 초과 2월 미만	10
2월 초과 3월 미만	15
3월 초과 4월 미만	20
4월 초과 5월 미만	25
5월 초과 6월 미만	30
6월 초과 7월 미만	35
7월 초과 8월 미만	40
8월 초과 9월 미만	45
9월 초과 10월 미만	50
10월 초과 11월 미만	55
11월 초과 12월 이하	60

② 기간제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3일 이상의 병가를 허가받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징계의 양정 등) 징계의 양정, 감경 및 가중 등 이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징계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제5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7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취업 규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 또는 감찰부서”는 각각 “총괄부서 또는 감찰부서”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신규채용지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기관(회사)명	담당 업무 (직무내용)	근무기간 (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p>※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근무사실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경력사항에 기재하여야 함</p>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취득일자	자격증(면허) 분야	발행기관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규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호2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000과(원·본부·사업소)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해당 사유가 확인 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호3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인사관리
- ▶ 수집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_____</li> <li>주민등록번호 _____</li> <li>자택전화 _____</li> <li>휴대전화 _____</li> <li>e-mail _____</li> <li>주소 _____</li> </ul>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격 및 면허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무급휴무일 매주 \_\_요일

\* 교대제일 경우 주휴일 : 첫 번째 비번일, 무급휴무일 : 두 번째 비번일로 정할 수 있음.

6. 임 금

- 월급여 : 2,090,000원(생활임금시급 10,000원 X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일당 : 8만원(생활임금시급10,000원 X 8시간,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별도 지급)

\* 생활임금시급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해당 항목(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월환산액)과 생활임금차액분을 포함하는 금액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자체 복무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복무지침명 기재)**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강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별지 제5호서식]

신 분 증



사 진

○ ○ ○  
영문

소 속 기 관 장

(앞면)

NO. 혈액형

신 분 증

소           속  
직           명  
성           명  
생   년   월   일

20 . . . .

소 속 기 관 장

(뒷면)

[별지 제6호서식]

## 재직 .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생년월일	
		한 자			
	③주 소				
재직·경력사항	④소 속				
	⑤직 명				
	⑥재직기간	년 월 일 (최초임용일 : )			
⑦용 도					

위와 같이 재직 .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b>근로자명부</b>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⑤ 담당업무		⑥ 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	
퇴 직	⑦ 퇴직일자	년    월    일	⑧ 퇴직사유	
	⑨ 금품청산 등			
⑩ 근 로 계 약 조 건				
⑪ 특기사항				





【별지 제10호서식】

##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

(20    년    월)

부서명:

성 명:

결	담당자	팀장	과장
재			

일자	요일	초과 근무 시간				비 고
		구분	근무시간	처리한 일	실적시간	
			부터	까지		
누적 합 계						

※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

[별지 제11호서식]

## [    ]월분 출근부

성명	1일 ( )	2일 ( )	3일 ( )	4일 ( )	5일 ( )	6일 ( )	7일 ( )	8일 ( )	9일 ( )	10일 ( )	11일 ( )	12일 ( )	13일 ( )	14일 ( )	15일 ( )	16일 ( )	NO.				
	17일 ( )	18일 ( )	19일 ( )	20일 ( )	21일 ( )	22일 ( )	23일 ( )	24일 ( )	25일 ( )	26일 ( )	27일 ( )	28일 ( )	29일 ( )	30일 ( )	31일 ( )						
																		출근	일	결근	일
																		연장근로	시간	조퇴	회
																		휴일근무	일	연가	회
																		출근	일	결근	일
																		연장근로	시간	조퇴	회
																		휴일근무	일	연가	회
																		출근	일	결근	일
																		연장근로	시간	조퇴	회
																		휴일근무	일	연가	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 이행, 유급 병가 및 출장여비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예방,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생략 및 기간 단축의 구체적 사유 명시 (제7조)
- 나. 기간제 근로자의 출장여비 지급근거 신설 (제25조)
- 다. 공가 사유에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핵검진 추가 (제28조)
- 라. 기간제 근로자의 병가기간 및 보수지급 사항 개정 (제29조)
-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제57조)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18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 인력 운용” 사항이 신설되어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법령 등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3호나목)
- 나.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지방교부세법」 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2조제2호)
- 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지방교부세법」 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3조제2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연동),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524 / FAX 064-710-3519
- E-mail : [kyh0080@korea.kr](mailto:kyh0080@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
- 개최주소: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1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제2호)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안 제9조)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연동),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524 / FAX 064-710-3519

- E-mail: [kyh0080@korea.kr](mailto:kyh0080@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
- 개최주소: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20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장비 등의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소방력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특별법 제343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나. 소방서에 배치하는 근무요원의 분류체계 정비(안 제6조제1항)

-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팀장), 담당, 화재조사반장

→ 서장, 과장, 팀장

- (행정요원) 행정지원요원, 방호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구조구급요원

→ 행정지원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 (현장활동요원) 소방검사요원, 화재조사요원, 전산통신요원

→ 현장예방요원, 현장대응요원, 상황요원

다. 「소방기본법」으로 규정된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지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

라.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소방서 및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연동),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524 / FAX 064-710-3519

- E-mail : [kyh0080@korea.kr](mailto:kyh0080@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31.

○ 개최주소: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21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게 소관부서 직위 명칭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현행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게 소관부서 직위 명칭 변경

- (운항통제관) 방호구조과장 → 구조구급과장(안 제2조제1항)

- 119항공기사고조사단원, 자격심의 위원회 직위 및 팀 명칭 변경(안 제5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 소방행정담당 → 소방행정팀장, 예산장비담당 → 예산장비팀장

· 방호조사담당 → 대응조사팀장, 구조구급팀장 → 구조팀장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 및 용어 수정(안 제5조제3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 정비사 → 항공정비사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연동),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608 / FAX 064-710-3610

- E-mail : [didqhgjs0@korea.kr](mailto:didqhgjs0@korea.kr)

다.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31.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7호  
**등록대상동물의 도내 반·출입 등에 관한 관리요령  
 고시**

도내 반·출입하는 등록대상동물(반려견)에 의한 유기동물 발생 사전차단 등 제주형 동물등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도내 반·출입 등에 관한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1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 가. 제 목: 등록대상동물의 도내 반·출입 등에 관한 관리요령 고시
- 나. 목 적: 도내 반·출입하는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다. 반입금지 대상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 \* 등록대상동물: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 라. 시행일시: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
- 마. 위반 시 조치사항: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8호

**공공하수도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시행자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사업시행의 목적		· 강우시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한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방류해역 수질환경 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5755
사업시행지의 면적		영구점용 : 141.41㎡, 임시점용 : 204.89㎡
시설의 종류 및 명칭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9의2항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 월류수 처리시설 : 940㎡/hr(2계열, 470㎡/hr × 3(1)) - 시설규모 : W6.35m × L17.2m × H6.3m(월류수 처리시설) W2.6m × L3.75m × H2.7m(유량계실) W2.2m × L3.55m × H3.3m(유입밸브실)
예정하수처리구역 면적(km <sup>2</sup> )		0.843km <sup>2</sup>
사 업 시 행 기 간		2020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행정재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07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25명 이내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심의·조정)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2. 신청 자격

- 여성학자, 성인지·인권, 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 아동·가족, 일자리, 건축·토목, 문화 등 분야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여성·시민·사회·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제언 및 시책 추진에 적극적 관심 있는 사람

3.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20.3.16. ~ 4.6(21일간)
- 접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064-710-6512)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팩스, 우편(마감일 18:00 도착 분에 한함)
  - 전자메일 : hakim1@korea.kr
  - 팩스번호 : 064-710-6519
  - 우편접수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 자체 심사로 선정
- 선정 기준
  -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우선 선정
  -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위원회 3개 이상 활동 제한
- 선정 결과 통보 :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5.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내용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064-710-65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872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 고 명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공고

2. 공고사항

가. 등록연월일 : 2020. 3. 11.

나. 등록번호 및 업종 : 제05-18-0016호(식물보호업)

다. 상호·명칭 및 성명 : 주식회사 동해건설 (대표 김용훈)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14길 8-3(오등동)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875호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에 대하여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3. 1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물량) 100대
- (지원금액)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2. 지원 대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 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등록 차량 소유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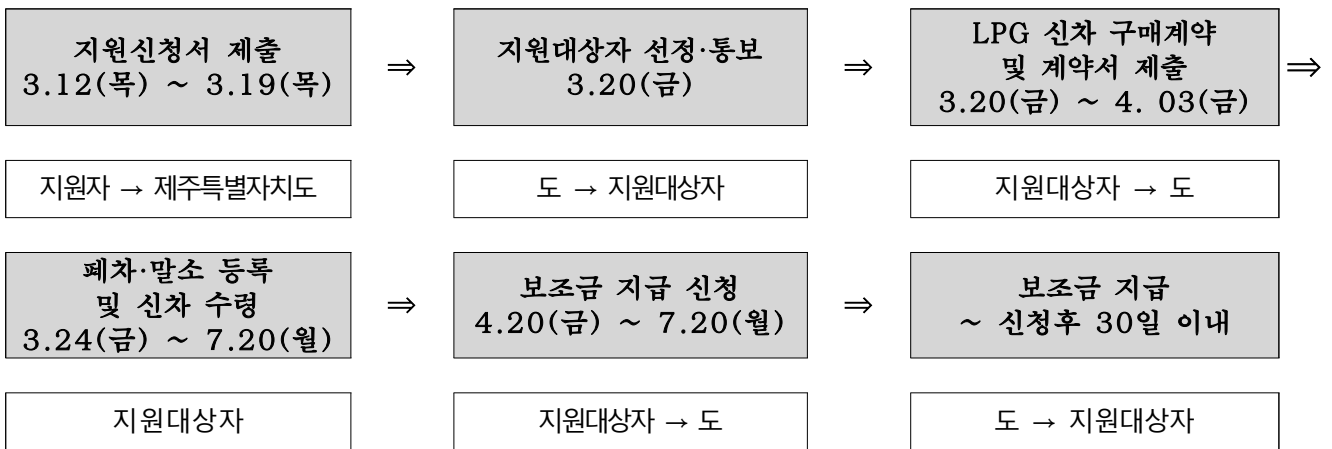
- (중복지원 제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가능)

※ LPG 신차 구입 후 제주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3.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2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우선지원)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
-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공립 시설은 직영 시 대상 제외)

4.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5.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3. 12.(목) ~ 3. 19.(목), 09:00~18:00/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제2청사 3층), ☎710-6084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공통) 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경유차), 각 1부
-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증명서 사본(제출시 우선 선발)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반드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도장에는 신청자 도장 날인.

6.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자) 2020. 3. 20.(금)
- (통보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 공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7. 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2020. 4. 03.(금)까지
- 보조금 지급신청서, 폐차 및 신차 출고 증빙서류 제출 : 2020. 7. 20.(월)까지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경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LPG신차),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필증 사본(LPG신차)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LPG신차) 각 1부.
  -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제2청사 3층), ☎710-6084

8.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지원대상자가 2020. 4. 03.(금)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2020. 7. 20.(월)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출고 지연시 신차출고일로부터(증빙서류 추가하여) 1월 이내 지급청구 가능

9.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10.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뭇 또는 다뭇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1.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제2청사 3층), ☎710-608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88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 신청에 따른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공고(수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을 공고(수정)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열람기간 : 2020. 2. 19.(수)~ 2020. 3. 20.(금)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52)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5층 건설회관 5층
3. 특구변경(안) : 붙임 1
4. 의견제출 및 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5층 건설회관 5층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52)
    - 이메일 : mmsyjh1516@korea.kr
  -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 : 2020. 2. 19.(수)~ 3. 20.(금) 18:00까지
5. 공청회 개최(예정) 공고
  - 공청회 개최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최일시 : 2020. 3. 20(목) 16:00 ~ 17:00
  - 공청회 개최장소 : 건설회관 3층 회의실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생략(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서식 : 붙임2

**붙임 1**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 특구지정 개요

- (목적)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 수립
- (위치·면적) 제주시 영평동 2170-1 등 총 0.922km<sup>2</sup>
- (사업자/지정기간) (주)시그넷에너지 등 15개 기업/기관, '19.12~'23.12(4년)

□ 지정변경 현황 : 특구사업자 삭제(1개사)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지인, (주)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주),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주)씨제이헬로 등 5개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지인, (주)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주),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등 4개사 -(삭제) (주)씨제이헬로</li> </ul>
<p><b>【변경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씨제이헬로 제주이전 불가로 사업포기 (사업포기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12. 06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li> <li>○ '19. 12. 20 실증특례확인서 발급(2019-제주-11)</li> <li>○ '19. 12. 26 최대주주 및 사명 변경 (당초) (주)J헬로 대표이사 변동식 (변경) (주)LG헬로비전 대표이사 송구영</li> <li>○ '20. 01. 14 특구사업 참여 불가 요청(공문서 접수)</li> </ul> </li> <li>■ 사업포기에 따른 역할(이용자 확보 등 영업, 마케팅 지원) 변경 (주)씨제이헬로 → (주)차지인</li> </ul>		

붙임 2

[서식- 전면]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의견서			
성명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제출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주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890호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 열람공고**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예정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행원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지정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2015. 9.)하였으며,
- 육·해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를 2022년까지 풍력발전사업(육상 151MW, 해상 702MW) 시행예정자로 지정(2015. 9.)하였음.
-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공모를 통해 구좌읍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후보지로 선정(2016. 1.)하여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풍력발전지구 개요

- 지 구 명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 30번지 일원
- 지구지정면적 : 997,946㎡
- 사 업 비 : 약 550억원
- 건설기간 : 2021. 1. ~ 2022. 12.
- 사업시행 예정자 : 제주에너지공사(시행자 : 제주보롬왓풍력발전(주))

※ 제주보롬왓풍력발전(주) : 행원리 마을회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주주로 구성 된 특수목적 법인

- 주요시설 : 육상풍력발전 21MW(4.2MW급 5기)
- 지정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20년(연장가능)
- 2. 주민열람 내용
  - 열람기간 : 2020. 3. 13 ~ 2020. 4. 1(20일간)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T.710-259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T.728-2832), 구좌읍사무소(T.728-7753),  
          행원리사무소(T.783-5889), 덕천리사무소(T.782-5788)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제주 보습앗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에 관한 사항
  -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 서식 : 열람장소 비치(서식 준용)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열람 장소로 제출
- 3.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T. 710 - 2593)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912호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열람공고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
- 사업명 :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 사업의 종류 : 에너지개발사업(풍력발전)
- 사업 부지면적 : 5.5km<sup>2</sup>
- 사업시행자
  - 상호 및 대표 : 제주한림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문봉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4층(연동, 건설회관)
- 사업시행기간 : 2020. 4. ~ 2023. 6.
- 총사업비 : 약 5,741억원

○ 사업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부응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도의 우수한 풍황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자체 재정수익 증대 등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발전소 건설사업

2. 주요내용

- 사업 시행기간 : 2020. 4. ~ 2023. 6.
- 사업부지(지구지정) 면적 : 5.5km<sup>2</sup>
- 발전설비 용량 : 100MW(5.56MW × 18기)
- 설비형식 : 풍력발전(수평축 프로펠러형)

3. 열람기간 : 2020. 3. 13. ~ 2020. 4. 1.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710 - 2593, FAX. 710-2539)
- ※ e-mail : qudrn7@korea.kr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3. 1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등록년월일	주된사업
374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44(일도이동), 서진하이츠 2층	이상범	'20.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보호사 교육, 취업알선, 권익보호</li> <li>○ 요양서비스와 복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발, 조사·연구</li> <li>○ 요양서비스와 복지에 관한 도서개발 및 발간, 정보제공 등</li> </ul>
<p>◇ 변경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초 : 제주시 서사로 28(삼도일동), 3층</li> <li>- 변 경 : 제주시 고마로 44(일도이동), 서진하이츠 2층</li> </ul> </li> </ul>					

제주시 고시 제2020-86호

고산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9.

제 주 시 장

1. 사업명 : 고산1리 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고산1리 마을의 주민소득기반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지역소득증대 : 농산물가공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6.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6백만원, 지방비 799백만원, 자부담 145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 분	사업량	단 위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b>합 계</b>			855 <145>	80	200 <73>	575 <67>		
지역소득 증대	<b>소 계</b>		578 <145>	-	87 <145>	491		
	농산물가공 센터건립 (기계구입포함)	1	식	578 <145>	-	87 <17>	491	
지역역량 강화	<b>소 계</b>		277	80	113	84		
	주민역량강화부문	1	식	75	27	18	30	
	컨설팅	1	식	35	-	-	35	
	홍보마케팅	1	식	19	-	-	19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148	53	95	-	

제주시 고시 제2020-87호

**신흥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10.

제 주 시 장

1. 사업명 : 신흥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신흥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용천수 정비, 정자조성
- 지역경관개선 : 마을탐방길 조성 및 안내판 제작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6. 사업비 : 500백만원

(국비 62백만원, 지방비 438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분	사업량	단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b>합계</b>			500	79	268	153		
기초생활기반	<b>소계</b>		310	-	207	103		
	용천수정비사업	1	식	290	-	187	103	
	정자조성	1	식	20	-	20	-	
지역경관개선	<b>소계</b>		40	-	-	40		
	마을탐방길 조성 및 안내판 제작	1	식	40	-	-	40	
지역역량강화	<b>소계</b>		150	79	61	10		
	주민교육	1	식	45	20	18	7	
	컨설팅	1	식	15	-	12	3	
	홍보마케팅	1	식	10	-	10	-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80	59	21	-	



제주시 고시 제2020-88호

광령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9.

제 주 시 장

1. 사업명 : 광령1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광령1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복지문화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6.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52백만원, 지방비 448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 분	사업량	단 위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b>합 계</b>			500	74	261	165		
기초생활 기반	<b>소 계</b>		314	-	200	114		
	복지문화센터	270	m <sup>2</sup>	314	-	200	114	
지역역량 강화	<b>소 계</b>		186	74	61	51		
	주민교육	1	식	40	32	8	-	
	컨설팅	1	식	40	-	20	20	
	홍보마케팅	1	식	30	-	10	20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76	42	23	11	

제주시 고시 제2020-89호

고산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9.

제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고산2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고산2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뱅디문화창고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신물동산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6.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지방비 425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 분	사업량	단 위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b>합 계</b>			<b>500</b>	<b>107</b>	<b>393</b>	
기초생활 기반	<b>소 계</b>		<b>274</b>	-	<b>274</b>	
	뱅디문화창고 조성	331	m <sup>2</sup>	274	-	274
지역경관 개선	<b>소 계</b>		<b>60</b>	<b>30</b>	<b>30</b>	
	신물동산 정비	1	식	60	30	30
지역역량 강화	<b>소 계</b>		<b>166</b>	<b>77</b>	<b>89</b>	
	주민교육	1	식	54	37	17
	컨설팅	1	식	20	-	20
	홍보마케팅	1	식	16	-	16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76	40	36

제주시 고시 제2020-90호

고성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애월읍 고성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10.

제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고성1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애월읍 고성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고성1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야외조명시설, 야외장터부스, 운동장천연잔디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6.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42백만원, 지방비 458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 분	사업량	단 위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00	59	441	-	
기초생활 기반	소 계		347	-	347	-	
	복합문화레저 공간조성	9,709	m <sup>2</sup>	347	-	347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153	59	94	-	
	주민교육	1	식	25	15	10	-
	컨설팅	1	식	20	-	20	-
	홍보마케팅	1	식	30	-	30	-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78	44	34	-

제주시 고시 제2020-91호

한원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한경면 한원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9.

제 주 시 장

1. 사업명 : 한원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구역 : 제주시 한경면 한원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한원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5.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6. 사업비 : 499백만원(국비 41백만원, 지방비 458백만원)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분	사업량	단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499	60	439	-		
기초생활기반	소계		352	-	352	-		
	복합문화복지공간	307.82	m <sup>2</sup>	352	-	352	-	
지역역량강화	소계		147	60	87	-		
	주민교육	1	식	60	20	40	-	
	컨설팅	1	식	9	-	9	-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78	40	38	-	

제주시 고시 제2020-92호

**한림3리 마을만들기(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제주시 한림3리 마을만들기(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10.

제 주 시 장

- 1. 사업명 : 한림3리 마을만들기사업(특화개발)
- 2. 사업구역 : 제주시 한림읍 한림3리 일원
- 3. 사업의 목적
  - 한림3리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경관개선 및 역

- 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공동주방시설, 재난안전시설
  - 지역경관개선 : 농업폐기물 자원재생분리수거장, 발담복원 및 마을경관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지역홍보, 컨설팅, 부대비용
- 5.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6. 사업비 : 1,501백만원  
(국비 194백만원, 지방비 1,307백만원)
- 7.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구분	사업량	단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b>합계</b>			<b>1,501</b>	<b>277</b>	<b>586</b>	<b>470</b>	<b>168</b>	
<b>기초생활기반</b>	<b>소계</b>		<b>856</b>	<b>147</b>	<b>393</b>	<b>316</b>	-	
	공동생활홈 조성	101.88	m <sup>2</sup>	316	-	-	316	-
	작은목욕탕 조성	105.98	m <sup>2</sup>	263	-	263	-	-
	공동주방시설 조성	112.31	m <sup>2</sup>	247	117	130	-	-
	재난안전시설 설치	1	식	30	30	-	-	-
<b>지역경관개선</b>	<b>소계</b>		<b>110</b>	-	<b>60</b>	-	<b>50</b>	
	농업폐기물 자원재생 분리수거장	1	식	60	-	60	-	-
	발담복원 및 마을경관조성	1	식	50	-	-	-	50
<b>지역역량강화</b>	<b>소계</b>		<b>535</b>	<b>130</b>	<b>133</b>	<b>154</b>	<b>118</b>	
	주민교육	1	식	100	40	18	19	23
	컨설팅	1	식	80	-	20	20	40
	홍보마케팅	1	식	65	-	15	35	15
	기본계획수립 등 부대비용	1	식	290	90	80	80	40

제주시 고시 제2020-96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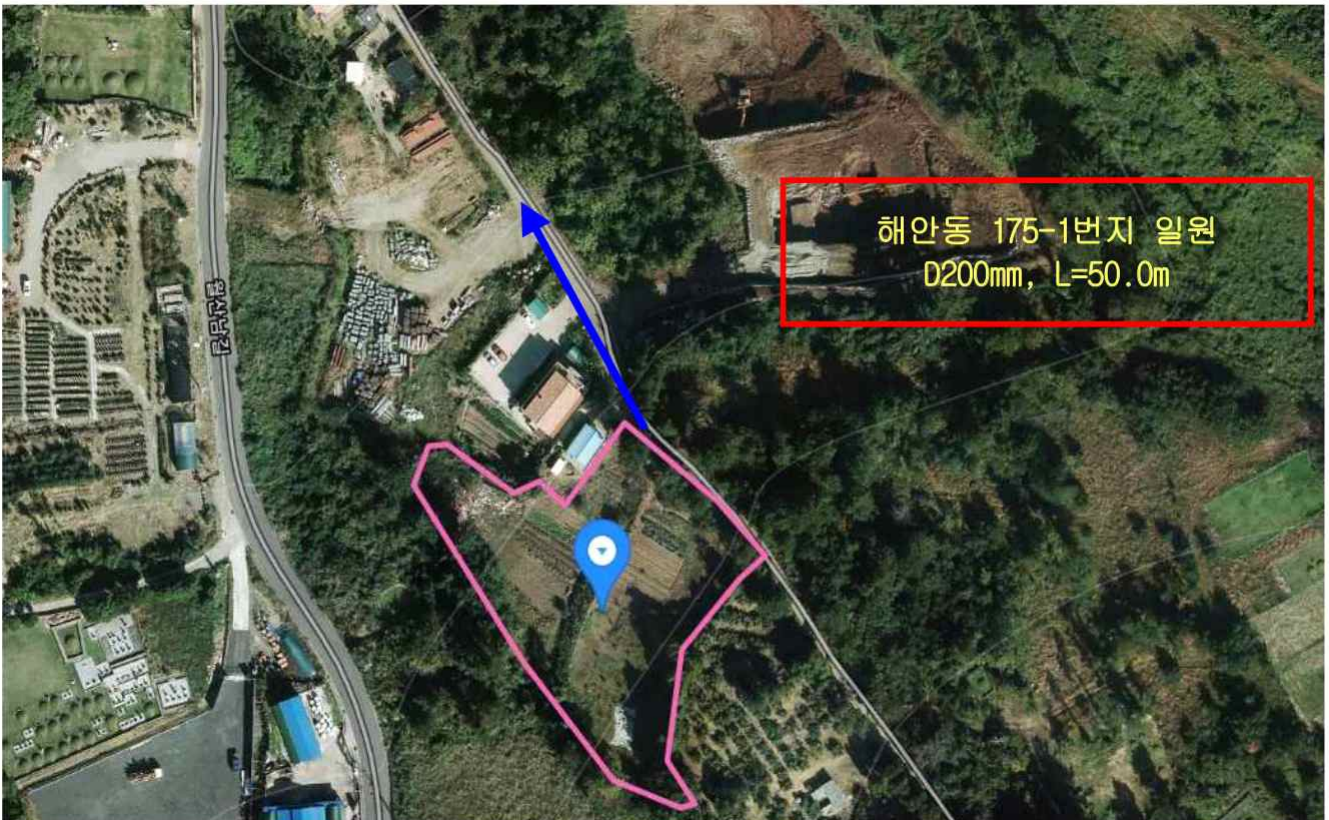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이 성 *
	등록번호	510716-*****
	주 소	제주시 월랑로12길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해안동 175-1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PE관 D200mm): L=50.0m ·오수맨홀(D900mm): 2개소	
공 사 기 간	2020. 03. ~ 2020. 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0-100호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시행계획 고시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에 대하여 2020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16.

제 주 시 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 사업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원
- 사업목적 : 구좌읍 농촌중심지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경제 등 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배후 마을 및 인근 읍면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함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 구좌 질그랭이거점, 구좌 청소년아지트, 구좌 생태놀이쉼터
  - 지역소득증대 : 구좌 푸드체험센터
  - 지역경관개선 : 구좌 일상재미공간, 거점 접근안내체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중심지 경영지원
  - ※ 부대비용 :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예비비 등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2020년 12월 (5개년)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국비 5,460, 지방비 2,340)
  - ※ 금회승인 사업비 : 2,402백만원

2. 금회(2020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내용	비고
계	2,402			
구좌 생태놀이쉼터	504	1식	생태놀이쉼터, 인공암벽장	
일상재미공간 및 거점안내체계 구축	804	1식	일상해변공간 조성, 이동식 도서관, 잔여주차 안내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	687	1식	교육·네트워크,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407	1식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등	

3.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증·감		비고	
		사업량	사업비	계	기승인 (19년까지)	금회승인 (20년)	향후계획	사업비		비율 (%)
<b>합 계</b>			<b>7,800,000</b> <200,000>	<b>7,800,000</b> <200,000>	<b>5,398,000</b> <200,000>	<b>2,402,000</b>			<자부담>	
기 생 기 획	<b>소 계</b>		<b>3,010,000</b>	<b>3,304,556</b>	<b>2,800,556</b>	<b>504,000</b>		<b>294,556</b>	<b>9.80</b>	
	구좌질그랭이거점	1식	2,100,000	2,394,556	2,394,556	-		294,556		
	구좌청소년아지트	1식	406,000	406,000	406,000	-			17년 준공	
	구좌생태놀이숲터	1식	504,000	504,000	-	504,000				
지 역 소 득 증 대	<b>소 계</b>		<b>800,000</b> <200,000>	<b>802,000</b> <200,000>	<b>802,000</b> <200,000>			<b>2,000</b>	<b>0.25</b>	
	구좌푸드체험센터	1식	800,000 <200,000>	802,000 <200,000>	802,000 <200,000>	-		2,000		
지 역 경 관 개 선	<b>소 계</b>		<b>1,190,000</b>	<b>1,190,000</b>	<b>385,722</b>	<b>804,278</b>				
	일상 재미 공간	일상쉼터 공간	1식	460,000	460,000	385,722	74,278			17년 준공
		일상해변 공간	1식	300,000	300,000	-	300,000			
	거점접근 안내체계	1식	430,000	430,000	-	430,000				
지 역 량 화	<b>소 계</b>		<b>1,400,000</b>	<b>1,400,000</b>	<b>714,512</b>	<b>685,488</b>				
	교육·네트워크	1식	466,000	466,000	267,982	198,018				
	컨설팅	1식	340,000	340,000	253,000	87,000				
	홍보마케팅	1식	438,000	438,000	120,530	317,470				
	중심지경영지원	1식	156,000	156,000	73,000	83,000				
부 대 비 용	<b>소 계</b>		<b>1,400,000</b>	<b>1,103,444</b>	<b>695,210</b>	<b>408,234</b>		<b>△296,556</b>	<b>21.18</b>	
	기본계획수립	1식	199,000	199,000	199,000	-				
	세부설계(3.35%)	1식	155,000	155,000	139,070	15,930				
	공사감리(7.60%)	1식	450,000	450,000	293,150	155,914				
	사업관리(1.42%)	1식	86,000	86,000	63,990	22,010				
	예비비	1식	510,000	213,444	-	213,344		△196,556		



제주시 고시 제2020-103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변경)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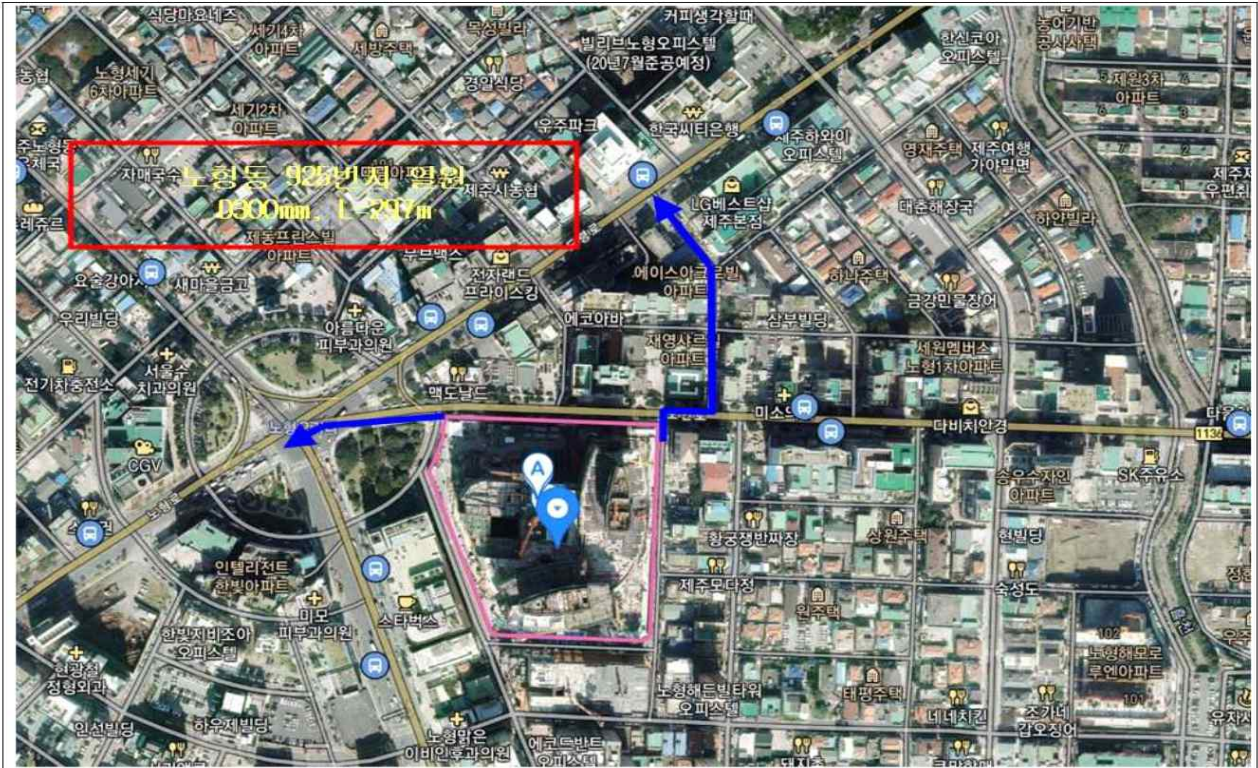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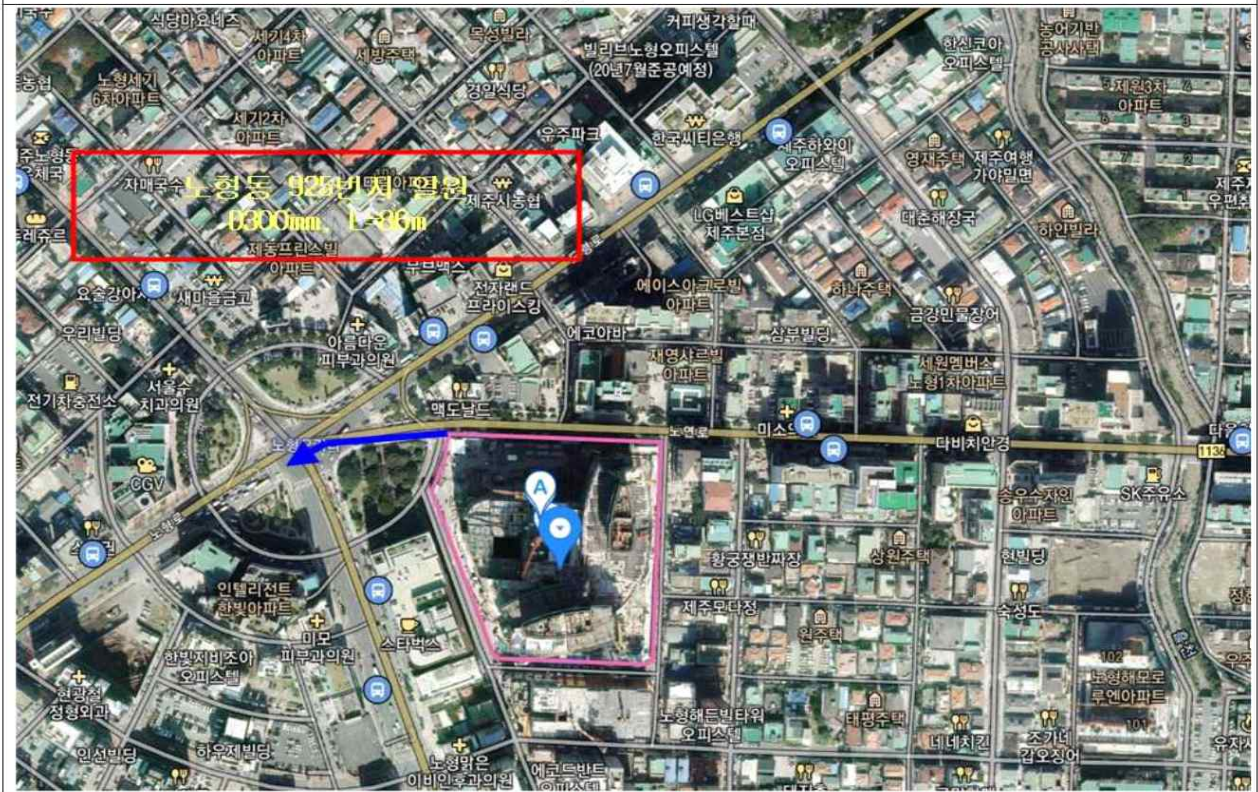
시 행 자	법 인 명	그린랜드** 유한회사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1100로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당초)·오수관(PVC이중벽관 D300mm): L = 297.0m ·오수맨홀(D900mm): 7개소 (변경)·오수관(PVC이중벽관 D300mm): L = 86.0m ·오수맨홀(D900mm): 2개소	
공 사 기 간	2020. 03. ~ 2020.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당 초



변 경



제주시 공고 제2020-949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제 주 시 장

1. 상 호 명: 미방건설
2. 대 표 자: 김 승 만
3. 법인(주민)등록번호: 560115 - \*\*\*\*\*
4.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129
5. 폐업신고업종  
가. 미장·방수공사업
6. 폐업사유: 사업포기
7. 등록말소일: 2020. 3. 10.

제주시 공고 제2020-96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3. 13.

제 주 시 장

-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3층)
- 열람기간 : 2020.3.13. ~ 2020.3.27.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제주시 광양9길 10), ☎ 064-728-3514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2첨단팀(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 빌딩 3층), ☎ 064-797-5625
- 의견제출기간 : 2020.3.13. ~ 2020.3.2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651-39번지 외 총 121필지(353,228.510㎡)
  - 토지소유자 : 강○희(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로 ○○) 외 112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651-39번지 소나무 등 총 849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공고 제2020-99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1-34	제주도 여행닷컴	변○철	제주시 고마로1길 26, 2층 (일도이동)	2020. 3. 27.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3. 13. ~ 2020. 3. 27. (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99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정지 기간	반송사유
700	제주해피데이여행사	박○숙	제주시 원노형3길 29, 1층 (노형동)	2020. 3. 12. ~ 2020. 5. 11.	수취인불명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 2020. 3. 13. ~ 2020. 4. 11. (30일)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00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776	제주올로투어	김○훈	제주시 동광로16길 15, 3층 (일도이동)	2020. 3. 27.	수취인불명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 가. 공고 기간 : 2020. 3. 13. ~ 2020. 3. 27. (15일간)
  -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제 주 시 장

서귀포시 공고 제2020-83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개설사업”,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열람 공고 및 개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8.

서 귀 포 시 장

아 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개설사업,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나. 사업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66-2번지, 대정읍 동일리 3107번지 일원

다. 시 행 자: 서귀포시장

2. 공고기간: 2020. 3. 18. ~ 2020. 4. 2.(15일간)

3.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서귀포시청 도시과

4. 공시송달 대상: 불임참조

5.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도시과(☎064)760-298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이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남원읍 태흥리	566-2	566-6	대		257						고*선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66-2	김*자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	가압류	수취인 불명
							창고	콘크리트 스라브	25	㎡				이*경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길 ***-(복산동)	토지주 손녀(김*순) 자녀	폐문 부재
							창고	블럭스레트	24	㎡				김*순	울산광역시 중구 구역전길 ***-(학성동)	토지주 손녀	폐문 부재
							담팔수	10년생	1	주				김*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 로 ***(팔복동*가)	토지주 손자	폐문 부재
							감귤나무	20년생	52	주				김*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 번길 **, 1호(남동)	토지주 손자	수취인 불명
							삼나무	20년생	15	주				김*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 ***-**, ***(**다세대주택)	토지주 자녀	폐문 부재
							측백나무	30년생	15	주							
							구름비나무	10년생	3	주							
							감나무	5년생	2	주							
							아왜나무	20년생	1	주							
							녹나무	15년생	2	주							
							비파나무	5년생	1	주							

○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이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대정읍 동일리	3107	3107-1	묘	묘	9						임*중	사정토지				수취인 불명
2	대정읍 동일리	3111	3111	묘	묘	46						김*진	사정토지				수취인 불명
3	대정읍 동일리	3156	3156	묘	묘	40						김*진	사정토지				수취인 불명
4	대정읍 동일리	3160	3160-1	묘	묘	15						김*진	사정토지				수취인 불명



서귀포시공고 제2020-833호

**대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대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붙임 이의신청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서 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위 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대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옹벽형 측구 L=280m 비탈면 녹화 A=2,372㎡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일원	2019.5.24. ~ 2020.12.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에 비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2020. 3. 13. ~ 2020. 3. 27.(14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064-760-3154, fax 064-760-31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64-760-3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공고 제2020-834호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귀포시장이 시행하는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6.

서 귀 포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난산리 221-3번지(시작점) ~ 신산리 653-2번지(끝점)
- 사업량 : 호안정비 5,425㎡, 교량 5개소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21. 12월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서귀포시장

3. 열람(공고)기간 : 2020. 3. 16. ~ 2020. 4. 2.(17일간)

4.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보, 전국시군구 게시판, 서귀포시 홈페이지

5. 협의방법

- 가. 협의기간 : 2020. 3. 16. ~ 2020. 4. 17.
- 나. 협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 760-3924
- 나. 협의방법 : 소유권 증명서류 구비 시 협의 장소에서 협의
- 라. 보상의 시기 및 방법 : 협의 완료 후 온라인 통장 입금
- 마. 보상절차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 바. 보상금액 : 해당토지 및 물건소유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문의 시 개별 통보
- 사.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력전체), 인감도장, 통장사본1통

6.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7. 기 타 사 항

- 가. 보상협의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760-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 장 (당초)	분 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지분의 표시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산읍 난산리	28-2	28-2	도로	298			298	㎡	강봉섭		성산읍 신산리 395				
2	성산읍 난산리	28-3	28-3	도로	364			364	㎡	강봉섭		성산읍 신산리 395				
3	성산읍 난산리	29-3	29-3	도로	129			129	㎡	김치준		미등기				
4	성산읍 난산리	65-4	65-7	전	4,107			934	㎡	농업회사법인 곡산주식회사		제주시 신성로2길 45, 301호(도남동,원신아파트)	구덕 새마을금고 참조은 새마을금고	한림읍 알주서로 5761	근저당권, 지상권	
						구름비나무	15년생	20	주							
						후박나무	15년생	1	주							
5	성산읍 난산리	70-1	70-1	도로	23			23	㎡	김성윤		미등기				
6	성산읍 난산리	72-1	72-1	도로	10			10	㎡	김준석		미등기				
7	성산읍 난산리	83	83-4	묘	1,966			536	㎡	강치권		미등기				
8	성산읍 난산리	83-2	83-2	천	17			17	㎡	강치권		미등기				
9	성산읍 난산리	83-3	83-3	천	143			143	㎡	강치권		미등기				
10	성산읍 난산리	84-2	84-2	도로	668			668	㎡	강치권		미등기				
11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1,508	㎡	이숙이	지분 400/1732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9	인천세무서	인천 남동구 안화로 548	압류(징세 -11139)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심화자	지분 200/1732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045-31 삼익그린아파트 2층 805호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최숙자	지분 100/1732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14-11				

도보 제844호 2020년 03월 18일(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 장 (당초)	분 할 (편입)			종류	구조			이름	지분의 표시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권태원	지분 100/17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6-1 대림비치아파트106호	권태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6-1 대림비치아파트106호	근저당권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오순자	지분 996/12124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기도길 178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최훈	지분 664/12124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12-13, 108동 1401호 (남통동,금오청구타운)				
	성산읍 난산리	84-4	84-6	임	5,240					최홍	지분 664/12124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54, 103동 1502호 (도량동,도량파크맨션)				
12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486	m <sup>2</sup>	이숙이	지분 400/1732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9	인천세무서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압류(징세 -11139)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심화자	지분 200/1732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045-31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045-31 삼익그린아파트 2동 805호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최숙자	지분 100/1732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14-11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권태원	지분 100/17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6-1 대림비치아파트106호	권태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6-1 대림비치아파트106호	근저당권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오순자	지분 996/12124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기도길 178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최훈	지분 664/12124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12-13, 108동 1401호 (남통동,금오청구타운)				
	성산읍 난산리	84-5	84-5	임	486					최홍	지분 664/12124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54, 103동 1502호 (도량동,도량파크맨션)				
13	성산읍 난산리	89-2	89-2	도로	10			10	m <sup>2</sup>	강인관		미등기				
14	성산읍 난산리	91-2	91-8	도로	101			101	m <sup>2</sup>	김치준		미등기				
15	성산읍 난산리	221	221-3	전	3,308			272	m <sup>2</sup>	김홍삼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291				
						감귤나무	30년생	40	주							

도보 제844호 2020년 03월 18일(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대 장 (당초)	지장물내역		분할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 장 (당초)	분 할 (편입)			이름	지분의 표시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측백나무	30년생	2	주							
						동백나무	15년생	7	주							
						주목	15년생	1	주							
						로즈마리	15년생	3	주							
						녹차나무	10년생	30	주							
						복숭아나무	25년생	1	주							
						대추나무	10년생	1	주							
						매실나무	25년생	2	주							
						자두나무	25년생	2	주							
						모과나무	30년생	2	주							
						방풍망	파이프 그물망	1	식							
16	성산읍 신산리	649-21	649-21	임	174			174	m <sup>2</sup>	강영숙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중앙로 32번길 21				
						삼나무	15년생	20	주							
						구름비나무	15년생	59	주							
						감귤나무	15년생	7	주							